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파주시 관내 무단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처리명령서를 송달하여야하나, 소유자(점유자) 불명으로 인하여 전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건설기계 소유자(점유자)는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 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 조치 시 「건설기계 관리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23. (30일간)
3. 공고대상 :

대상	(방치된)위치	소유주	비고
콘크리트 믹서트럭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산1-21 일원	미상	붙임 참고

4. 공시송달 내용

가. 무단방치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 처리 (회수 또는 폐차)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처리(폐차)됨은 물론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 031-940-5911)

2026. 8. 25.

파 주 시



제 호				
건 설 기 계 처 리 명 령 서				
소 유 자 (점유자)	성명(명칭)	미상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미상
	주 소	미상		
건설기계	등 록 번 호	미상	차 대 번 호	미상
	기 종	콘크리트믹서트럭	형 식	
	방치된장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산1-21 일원		
	보관된장소			
명 령 사 항		2026년 9월 23일까지 위 건설기계를 자진회수 또는 폐기 조치할 것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자진처리를 명령하니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파 주 시 				